

경상남도 함양군 대한민국 ROTC중앙회

업무 협약서

경상남도 함양군(이하 “함양군”이라 한다.)과 대한민국ROTC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함양군과 중앙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사업의 범위】 중앙회와 함양군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 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 및 농촌사랑운동 실천
- 나. 함양군의 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 다. 중앙회 및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함양군 유치 및 행사추진에 따른 함양군의 행정편의 제공
- 라. “ROTC 쇼핑몰”에 함양군 농산물 입점
- 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전먹거리 제공
- 바. 기업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적 편의제공 및 정보제공
- 사. 주소득 작물(사과, 양파, 산양삼 등) 상품 최저가 판매
- 아. ROTC 회원 함양군 귀농, 귀촌 또는 이주 시 정착 지원
- 자.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지된다. 다만 일방이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협약을 종료하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조건하에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4조 【보안】 본 협약체결 과정에서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는 양 기관 간에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외부유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하며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조 【기타】 함양군과 중앙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시 관련 조직으로 하여금 본 협약서를 기준으로 구체적 협력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을 대표해 함양군수와 대한민국 ROTC중앙회가 각각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23일



함 양 군

군 수

대한민국 ROTC중앙회

회 장